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숭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9 발의연월일: 2021. 6. 24.

발 의 자:김승남・김회재・송갑석

인재근 • 민병덕 • 김원이

고영인 • 이개호 • 양정숙

김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인구의 감소로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중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소멸위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주여건의 개선 이외에 제도적 측면에서 주거이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부동산 현행 시세를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 상한선을 배제하고, 농어촌주택 가격 조건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배제를 위한 일몰제를 부활하고 읍면지역의 도시지역은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소멸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읍·면의 도시지역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추가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 나. 농어촌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2억원(한옥 4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여 현행 주택시세를 반영하고 가격기준을 일원화함 (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 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하는 기존 1주택의 고가 주택가격 기준 상향(9억원→15억원)함(안 제99조의4제2항).
- 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 용하는 조항의 일몰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5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중 "도시지역"을 "도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 주택의 기준은 15억으로 한다.

제99조의4제5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세992	조의4(농어촌	혼주택	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	소득서] 과	세특례)
1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1.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 - 주택"이라 한다) -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 1) (생략)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 3) ~ 5) (생 략)
-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 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l
가
1) (현행과 같음)
2)
도시지역(「지방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 4회 제 교 O 머 기
제4항에 따른 읍・면 지
<u> 세4양에 따른 급·먼 시</u> 역은 제외한다)
역은 제외한다)
9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역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나
역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나
역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나
역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나

것

2. (생략)

<신 설>

- ③ ④ (생략)
-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 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 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 득세법 .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 을 수 있다.
- ⑥ ~ ⑧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은 15억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2022
<u>2023년 1</u>
2월 31일
2월 31일
<u>2월 31일</u>
<u>2월 31일</u>
<u>2월 31일</u>
2월 31일
<u>2월 31일</u>

⑥ ~ ⑧ (현행과 같음)